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영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고시 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229(2016. 3. 29.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(고시 제2016-37호, 2014. 3. 11.)을 불임과 같이 개정·발령 하였기에 안내 해 드립니다.

□ 주요 개정 사항

○ 신설 1개 항목

[229] Tiotropium + Olodaterol 흡입제(품명: 바헬바레스피맷)

○ 변경 7개 항목

[일반원칙]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

[일반원칙] 당뇨병용제

[142] Sirolimus 경구제(품명: 라파윤정 1밀리그램, 2밀리그램)

[218] Ezetimibe 경구제(품명: 이지트롤정)

[245] 스테로이드 주사제 (Triamcinolone acetonide, Methylprednisolone acetate,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등)

[266] Imiquimod 12.5mg 외용제(품명: 알다라크림)

[633] Antivenin agkistrodon halys (품명: 코박스건조살무사항독소주 등)

※ 시행일 : 2016년 4월 1일

불임 : 개정고시문 및 변경대비표.

※ 불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메뉴상단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.

대한병원협회



수신처

전국 병원장

사원 김재현 팀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6-153 (2016.03.30)

우 121-737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5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kjh@kha.or.kr